

2. 雇傭保險制 實施 臨迫

- (초점) 30인 이상 事業場 대상 95년 7월부터 실시, 98년에 10인 이상 확대
- (내용) 雇傭保險制는 失業保險이라는 社會保障制의 性格과 동시에 人力需給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적극적 人力政策의 性格도 지님
- (효과) 雇傭保險制는 大企業이 주로 費用을 부담해 恵澤은 中小企業이 받는 성격이 강하나 大企業의 經營環境을 改善시켜 줌
- (문제점) 大企業의 負擔縮小, 民間主導運營 등 改善餘地 존재

-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事業場 대상으로 95년 7월부터 실시
 - 中小企業의 어려움을 감안 商工部나 中小企業中央會 등을 150인 이상을 적용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. 그러나 입법예고된 勞動部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은 30인 이상을 고수
 - 30인 이상으로 할 때 事業場의 24.7%, 常用 労動者의 75.7%에 적용

<보험요율의 국제비교>

(임금총액 기준, %)

	한국	독일	프랑스	일본	미국
총보험요율	1.3	6.8	6.9	1.73	1.3
사용자 부담	1.0	3.4	4.43	1.18	1.3
근로자 부담	0.3	3.4	2.47	0.55	-

· 93년 임금기준으로 사용자는 월 10,000원, 근로자는 월 3,000원 정도 부담

- 雇傭保險制는 失業給付를 지급하는 社會保障制의 性格과 동시에 積極的 人力政策의 性格 지님
 - 특히 雇傭保險은 모든 가동인력의 電算化로 求人, 求職의 POOL을 형성, 각종 고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적 人力需給 不均衡에 對應하기 위한 제도
 - 1.3%의 保險料率 중 0.6%는 失業給與, 0.3%는 雇傭安定事業, 0.4%는 職業能力開發事業에 사용될 예정
 - 적극적 인력정책 = 雇傭安定事業 + 職業能力開發事業
 - 雇傭安定事業: 휴업, 전직훈련 등 고용조정시 支援金, 地域雇傭, 高齡者雇傭, 女性雇傭 促進을 위한 嘉勵金 支給 등
 - 職業能力開發事業: 事業內 職業訓練이나 外部 派遣 教育訓練 등에 嘉勵金을 支給, 職業訓練施設에 대해 支援

○ 雇傭保險制의 恵澤은 주로 中小企業體에 集中될 것으로 예상

- 雇傭保險制는 大企業이 負擔하는 費用을 주로 中小企業을 위해 使用하는 社會保險의 성격을 지님.
- 失業給與의 對象인 失業者는 雇傭이 상대적으로 不安定한 中小企業 勤勞者임.
- 中小企業에 人力難集中, 經營不安定으로 休業, 人力再配置 등이 자주 발생, 高齡者, 女性의 就業比率도 더 높음. 雇傭保險의 受惠 對象은 주로 中小企業
- 하지만 근로자 1인당 부담 保險料 수준은 근로자수 30인인 중소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의 76.3%에 불과

○ 그러나 大企業의 經營 環境을 改善시켜 주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

- 雇傭保險制는 情報 不足으로 인한 人力需給의 不均衡이나 技術的 失業을 줄이고 女性이나 高齡者의 勞動市場 參加를 높여 人力難을 緩和 --> 賃金上昇 壓力이 커지고 勞動組合의 交渉力이 強化되는 등 인력난의 부정적 효과 축소
- 產業構造調整을 촉진시켜 經濟의 高附加價值化 경향을 加速화시킬 것임.
- 失業給付는 有效需要의 安定化에 기여하게 될 것임.

○ 運營方法 등에 있어 改善의 餘地도 있음

- 현행 고용보험제는 대기업의 부담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 --> 실시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수혜비율을 고려해 負擔과 受惠의 格差가 너무 크다면 사회보험적 성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大企業의 負擔을 낮추고 中小企業의 負擔을 높이는 조정이 필요
- 官主導로 運營될 경우 비용절약적 마인드가 부족, 운영과정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력을 보유하는 등 否定的 側面이 나타날 우려 --> 雇傭保險의 運營을 民間에 委任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
- 현재 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제가 적용되지 않는 中小企業의 人力難은 더욱 深化될 우려, 영세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25%의 근로자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고용보험제가 적극적 인력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측면 -->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
- 그러나 이 때 零細 中小企業의 負擔 加重 우려, 그 부담 완화를 위한 政府補助 필요. 정부의 비용부담을 감안하면 우선 人力難이 深刻하며 產業構造調整의 主對象인 製造業만 실시, 段階적으로 그 適用 產業을 擴大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일 방안임. 또 적용대상의 확대와 함께 정부보조는 점차 줄여야 함
- 日本의 경우 적용 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일단 적용된 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였음.

(채창균)